

『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(안)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9월 3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0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0월 10일

제1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함.

다. 주요내용

[취득재산]

○ 건 물 (신축)

- 위 치 : 구미시 남통동 200-2번지 일원 (자연환경연수원내)
- 기준가격 : 6,194백만원 (건축공사비 기준)
- 시설규모 : 연면적 2,389.75㎡ (지하1/지상2)
 - 상설전시실 (기후변화관, 탄소제로관, 제로실천관)
 - 기획전시실, 야외 전시, 세미나실, 다목적 홀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제1항제6호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제1항 및 제3항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제4항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성 애

○ 본 변경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과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건물신축에 따른 재산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구미시 남통동 200-2번지 일원(자연환경연수원내)에 위치한 연면적 2,389.75㎡의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신축 건물을 6,194백만원 (건축공사비 기준)으로 건립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변경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시민들에게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 생활 및 신재생 에너지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제로 도시를 지향하는 구미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구미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